

#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도시화속의 아시아 우량기업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0년 9월 30일

### 3. 변경사유

- ① 컷-오프제도(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편) 시행
  - 판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
  -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일부개정
- ② 집합투자규약 변경(2020-10-05 시행)

### 4. 변경사항

#### 가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b>제25조 (판매가격)</b>	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<b>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</b>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__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<b>제3영업일에</b>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한다.</p>	<p>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<b>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에</b>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__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금전등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<b>제4영업일에</b>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(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)으로 한다.</p>
<b>부칙</b>	<b>&lt;신 설&gt;</b>	<b>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</b>

#### 나. 투자설명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														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										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b>&lt;추 가&gt;</b>	<b>2020-09-30</b> · 컷-오프제도(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편) 시행 - 판매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-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일부개정 · 집합투자규약 변경(2020-10-05 시행)									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	(가) <b>17시(오후 5시)</b>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b>제2영업일(D+1)</b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(나) <b>17시(오후 5시)</b>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b>제3영업일(D+2)</b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(이하 생략)	(가) <b>17시(오후 5시)</b>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b>제3영업일(D+2)</b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(나) <b>17시(오후 5시)</b>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b>제4영업일(D+3)</b> 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(이하 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대상자산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변경 전</th> <th style="width: 45%;">변경 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상장주식</td> <td>평가기준일에 <b>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</td> <td>평가기준일에 <b>증권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</td> </tr> <tr> <td>비상장주식</td> <td>취득원가 또는 <b>채권평가회사·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·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</b>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</td> <td>취득원가 또는 <b>채권평가회사·회계법인이 제공하는</b>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. 다만,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<b>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</b></td> </tr> <tr> <td>집합투자증권</td> <td>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,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<b>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</td> <td>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,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<b>증권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</td> </tr> <tr> <td>외국집합투자</td> <td><b>평가기준일에</b>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</td> <td><b>평가기준일 전날의</b>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자산	변경 전	변경 후	상장주식	평가기준일에 <b>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평가기준일에 <b>증권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비상장주식	취득원가 또는 <b>채권평가회사·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·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</b>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	취득원가 또는 <b>채권평가회사·회계법인이 제공하는</b>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. 다만,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<b>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</b>	집합투자증권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,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<b>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,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<b>증권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외국집합투자	<b>평가기준일에</b>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	<b>평가기준일 전날의</b>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	
	대상자산	변경 전	변경 후														
	상장주식	평가기준일에 <b>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평가기준일에 <b>증권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													
	비상장주식	취득원가 또는 <b>채권평가회사·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·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</b>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	취득원가 또는 <b>채권평가회사·회계법인이 제공하는</b>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. 다만,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<b>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</b>														
	집합투자증권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,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<b>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,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<b>증권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													
외국집합투자	<b>평가기준일에</b>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	<b>평가기준일 전날의</b>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															

증권	격에 의함. 다만, <b>외국시장에</b>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<b>외국의 시장에서</b> 거래된 최종시가	기준가격에 의함. 다만, <b>외국증권시장에</b>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<b>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</b> 거래된 최종시가
외화표시 상장주식 및 채무증권	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<b>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</b> 또는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	평가기준일 전날에 <b>해외증권시장에서</b> 거래된 <b>최종시가</b>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
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	<b>채권평가회사가</b> 제공한 <b>가격을</b> 기초로 한 가격	<b>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</b> 제공하는 <b>가격정보를</b> 기초로 한 가격
장내파생상품	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<b>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계산할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)</b> 에 의함. 다만, 평가일의 <b>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에</b> 의하여 평가	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<b>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(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하는 가격)</b> 에 의함. 다만, 평가일의 <b>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</b> 의하여 평가
장외파생상품	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<b>가격과</b>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<b>가격에</b> 기초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가격.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 또한 이와 같습니다.	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<b>가격 또는</b>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<b>가격정보를</b> 기초로 한 가격. 파생결합증권의 평가방법 또한 이와 같음

끝.